



제조물책임법(PL) 대응 방안 (마지막회)

편집실 제공

결함의 유형

PL법의 취지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의해 소비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조업자의 책임을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것에서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것에 기초를 둘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PL법에서 대두되는 결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결함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 이라 정의하고 있다.

보통 결함의 유형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혹은 구조상의 결함), 경고상·지시상의 결함으로 나뉜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산과정에서의 과오, 제품 조립에서의 과오 또는 검사방법에 있어서의 과오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설계상의 결함이나 경고상·지시상의 결함이 인정되면 동일제품 모두에 결함이 인정되는 것이다.

경고상·지시상의 결함은 위험에 대한 경고나 사용방법 등 제품이 의도된 대로 사용될 것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결함이다.

PL법 제정 이전의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 등의 책임을 둘러싸고 다투어진 이전의 판례에 있어서는 경고상·지시상의 결함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안이 종종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설계상, 구조상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결함에 관한 것이다.

결함의 유형에 따른 소송사례

제조상의 결함

예 1) 컬러TV 화재사건 – 1996년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컬러TV 화재사건은 소비자가 안방에서 VTR 겸용 TV를 시청하던 중 발생하였다. 갑자기 텔레비전 뒷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올라 동작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뽑았으나 곧이어 텔레비전에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 오르며 커튼에 옮겨 붙어 건물의 2층 내부와 그 안의 가재도구가 전소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텔레비전 이용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 으로 그 제품에



결함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결함은 유통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바 제조자는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예 2) Escola v. Coca Cola Bottling Co. 사건 – 본 사건은 식당의 웨이트리스인 원고가 코카콜라 병을 따는데 갑자기 병이 폭발하여 다친 사건으로 판사는 ‘비록 제조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 시장에 유통되도록 만든 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예 3)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 – 1962년 캘리포니아에서 원고가 목공선반에서 작업하던 중 선반을 고정하는 스크루가 풀리면서 나무조각이 갑자기 튕겨져 나와 이마를 쳐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결함이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어놓는 제조자가 과실여부를 떠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내렸다.

설계상의 결함

예 1) Barker v. Lull Engineering Co. 사건 – 본 사건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로더에 관한 소송이다. 경사진 곳에서 목재를 들어올리다가 균형을 잃어 목재가 떨어져 로더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 로더 제작사는 경사진 곳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균형 유지를 위해 별도의 받침대를 로더에 설치하지 않은 설계결함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예 2) 석유난방기구의 결함 – 1985년 일본에서 석유난방 기구의 결함이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 기업에게 큰 부담을 준 사례가 있다. 이 피해는 석유난방기구의 제품 본체에 장치되어 있는 급기구가 면지 등이 부착되기 쉬운 구조로 제작되어 공급되는 공기부족에 의해 불완전 연소가 발생, 이로 인해 소비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18건이나 되었고, 4명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1986년 초 제조회사 사장이 인책 사임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실은 배상책임의 부담과 이미지 실추로 입은 손실 외에 해당제품을 리콜하는 데만 비용이 약 30억엔에 이르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경고상 · 지시상의 결함

예 1) 가스레인지 사건 – 본 사건은 가스레인지의 평상시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경까지 A, D 두 개의 곤로에 도시가스를 점화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사용자가 가스레인지의 사용하는데 가스레인지 뒷부분에 설치된 배기고에서 발산된 열기가 가스레인지 뒷부분 벽면에 붙어있던 베니어판 및 A곤로 뒷부분의 기둥에 침투, 계속 가열되어 화재를 일으킨 사건이다.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가스레인



지와 같은 화력을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납품시 안전한 사용을 지시 및 설명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지고 있으며, 이것을 불이행했을 시 발생한 손해에 관해 책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예 2) Powell v. Standard Brands Paint Co. 사건 – 본 사건은 타일접착제 제거용 신나를 타일 바닥에 뿌리고 전동연마기를 작동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신나 제조업자는 이와 같은 폭발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외에도 PL법은 집단소송제도와 결부될 경우 가공할 파괴력을 발휘한다. 그 때문에 유명한 PL소송은 대부분 집단소송으로 제기된 것이다. 고엽제소송, 폐암을 일으키는 석면소송 등이 그 예이다. 고엽제소송은 월남전 때 살포된 제초제에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호지킨스병 등을 일으키자 제조 7개사가 1억8천만달러에 합의를 봤던 사건이다.

또한 F사의 Pinto사건도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이다. F사의 차가 급기속현상을 일으켜 차가 갑자기 튕겨나가자 미국 소비자단체가 이를 집중공격하였다. 결국 미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연구단까지 구성, 연구를 거쳐 결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해당 차종의 판매가 급격히 감소, 결국 판매가 중단되었다.

표 1. 미국에서 제소된 자동차 관련 일본기업의 PL소송사례

판결 년월 및 법원	피고회사(제품)	판결내용	사고내용(원고의 주장)
1982. 10 연방대법원	H공업 (경자동차)	배상금 582.5만달러	대형차와의 충돌로 운전중이던 여성이 하반신 불구가 됨 (충돌시 안전성에 결함이 있음)
1982. 11 텍사스주 지방법원	Y사 (오토바이)	화해금 700만달러	다른 차와 충돌시 가솔린 탱크의 뚜껑이 열려 운전자는 중화상을 입고 보행불능이 됨
1983. 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N사 (자동차)	배상금 935만달러	뒷차와의 충돌로 후부좌석에 던져져서 척추를 다침 (운전석의 결함)
1983. 10 플로리다주 항소심	T사 (자동차)	배상금 500만달러	추돌 당시 연료탱크의 뚜껑이 벗겨져 3명의 자매가 불에 타 숨짐
1984 워싱턴주 항소심	Y사 미국법인 (오토바이)	배상금 1,000만달러	사고로 운전자가 사지장애를 입음
1986. 4 텍사스주 지방법원	H공업 미국판매자 회사(1인용 차)	화해금 650만달러	1인용 차가 뒤집어져 동승자가 하반신 마비가 됨 (2인 승차금지라는 라벨이 보이지 않았음)

*최병록, PL의 대책실무(한국능률협회 원격교육교재)



표 2. 미국에서의 PL소송사례

제품	사고	배상 (청구액)	피고	발생지	발생 년도
셔츠	6세 소년이 입고 있던 셔츠가 불에 타 화상을 입음	526만달러	메이커 도매상	조지아주	1982
알루미늄 캡	청량음료의 캡을 돌렸을 때 캡이 왼쪽 눈에 뛰어 22세의 남자 부상	25만달러	캡 메이커	텍사스주	1982
콜라병	종이상자 포장의 콜라병이 집의 베란다에서 파열, 8세의 소년이 실명	30만달러	병조립판매사· 병메이커	네브라스카주	1982
선풍기	선풍기의 날개가 빠져 27세의 남성이 날개에 팔을 찔림. 남성의 팔은 영구 감각 기능 마비	20만달러	메이커	미조리주	1988

우리 나라에서 아직까지 PL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법원에서는 PL법의 정신을 반영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이제 PL법은 과실책임의 원칙에서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으로 전환하게 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PL법의 시행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결함의 개념, 결함유형, 판단기준, 기타 제조물의 범위 등을 명백하게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편집부>